

구립사당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센터는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센터에 대해 이용자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르며, 운영규정상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내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 ② 비급여 항목은 식비와 간식비로, 식비와 간식비는 내부이용료지침으로 정한다.
- ③ 이용료에 대한 변경은 등급과 요양보험수가, 비급여 변경에 따른다. 다만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는 이용자 주보호자에게 유선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통지하고 본 계약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④ 등급외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이용료는 지자체 운영지원 지침에 따른다.
- ⑤ 이용료는 익월 20일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 ⑥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
- ⑦ 이용료의 납부는 온라인 입금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입금이 어려울 경우 예외로 한다.
- ⑧ 센터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시)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서를 받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해야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을 선고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3.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4. 인수인은 이용계약과 함께 이용자가 안정된 센터 이용을 위해 본 데이케어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인수인은 본 센터 이용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6.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5. 계약의 해지

센터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 연체가 제 7조 해당하였을 때
3.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입원 등의 사유로 3주 이상 장기 결석하는 경우
5.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협조가 되지 않을 때

6. 계약의 종료

센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때 입소자와 계약을 종료한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2. 이용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등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② 센터는 직원이 업무수행행위 중 이용자에게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입히게 되거나, 또는 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 ⑤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